

국세청 고시 제2026-048호

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행에 따른 사전 신고 및 미보유자 소명 안내

안녕하십니까, 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입니다.

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(가상자산의 양도·매매 소득) 및 제37조(기타소득의 필요경비) 개정안이 2027년 1월 1일자로 시행됨에 따라, 국세청은 **전 국민을 대상으로** 가상자산 보유 현황 사전 파악 및 과세 표준 등록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
본 소명 절차는 원활한 행정 처리를 위해 **2차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**됩니다. 홈택스 시스템의 동시 접속 과부하를 방지하고, 각 이메일 서비스 제공자와의 본인 확인 연동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**이메일 기반의 사전 소명 절차**를 채택하였습니다.

1차 (2026년 8월) 네이버 메일 및 카카오 메일 사용자 대상 **← 현재 진행 중**

2차 (2026년 9월) 그 외 이메일 서비스 사용자 대상 (지메일, 아웃룩 등)

본 소명 절차는 **2026년 3분기 내에** 완료 예정입니다.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계산 경우 **사전 신고**를, 보유하지 않거나 거래한 적이 없으신 경우 **'미보유 소명 등록'**을 완료하셔야 부당한 세금 부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기한 내 미이행 시 2027년 과세 연도 개시와 함께 별도 통지 없이 과세 대상으로 자동 분류됩니다.

소명·신고 바로가기

주요 안내 사항

소명·신고 기한 **2026년 8월 31일(월)** (기한 경과 시 과세 대상으로 자동 분류)미소명 시 불이익 미신고 가산세 **20%** 부과, 세무조사 대상 편입

소명 방법 홈택스 본인 인증 → '가상자산 미보유 사실 확인서' 제출

근거 법령 소득세법 제37조의2,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8

감사합니다.

국세청 디지털자산총괄과

- ※ 본 메일은 발신 전용이며 회신되지 않습니다.
- ※ 문의: 국세상담센터 ☎ 126 (평일 09:00~18:00) 또는 관할 세무서
- ※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27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한 안내입니다.
- ※ 본인이 아닌 경우 즉시 삭제하여 주시가 바랍니다.